실사가 나왔을때 전략

그들의 특성

그들은 공무원이다.

- 나온 이상 반드시 기본 이상은 해야 한다.(기본이 안 될 것 같으면 억지 조항을 들이대서라도 일정 성과는 가지고 가야 함) •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낱낱이 밝힐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.
-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너무 틀어져 버리면 없던 열의가 생길 수 있다.
- ▋ 3사(복지부 / 심평원 / 공단) 연합 팀이고 급조된 팀이다.
 - 초기부터 손발이 잘 맞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한다.
 - 서로 감시가 되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갈 수는 없다.
- 그들이 찾으려고 하는 내용들
- 1) 조사
- 원칙적으로 현지 조사는 전수 조사이다.(불똥이 어디로든 튈 수 있으며 일단 번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도
- 있다.) • 우선 현지 조사가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.

-> 이 부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'기본'이다.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.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 부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게 막아야

-> DB를 분석하면 이 항목들과 그 수진자 리스트를 뽑을 수 있다. 이에 대해 서류 / 수진자 통화 / 직원 면담

• 그 이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.(시간이 없으면 더 조사 안 한다.)

• 그들의 입장에서는 현지 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.

- 2) 진료 관련
- ① 기본 항목(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)

한다.

• 실사 나오기 전, 그 병원의 청구 내역을 분석해서 타기관에 비해서 특이해 보이는 부분들

• 다빈도 청구 항목

② 추가 항목 • DB를 이용해 뽑아낸 자료들

•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

- 비급여 리스트 중 임의비급여 항목 • 비급여 리스트 중 다빈도 처방 항목
- 비급여 리스트 중 문제가 있을 만한 항목(유착방지제/영양제 등)

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한다.

• 흔히 착오 청구를 할 만한 항목

- 🛮 3) 시설, 인력, 장비 등이 신고 된 내역과 실제가 일치하는 지 확인
-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항목

- > 이들을 통해 어떻게든 성과를 맞추려 한다.

1) 눈에 보이면 잡는다.(->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넘어간다.)

• 2), 3)을 통해서 만족한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

- 실제적인 대응전략

4) 함정 항목

• 모든 답변은 원장을 통해서만 한다. 원장: '모든 내용은 내가 답변할테니 직원들에게는 묻지 말라.'

• 실사 나오면 일상으로 하던 병원 내 모든 업무를 멈춘다.

• 간단한 자료라도 반드시 원장이 직접 확인 후 제출한다. • 자료 검토 후 필요하면 수정해서 준다.(그들은 수사관이 아니다. 자료의 진위를 밝힐 정도의 능력도, 의지도 있지

직원: '저는 직원이라 드릴 말씀이 없으니 모든 내용은 원장님께 여쭈어보시라'

- 않다. 그냥 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다.)
- ① 자료 제출은 최대한 천천히 한다.

▮ 2) 시간을 끌어야 한다.

② 시간이 되면 가야 한다.(그들도 다음 스케쥴 있음) • '기본 항목'에서 싸우다가 가게 해야 한다.

• 자료를 안 주면 안 된다.(업무 정지 1년)

- 자료를 빨리 줘서 '기본 항목'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항목으로 진도가 넘어간다. • '기본 항목'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, 이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결되어 버리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게
- 된다.(그들은 '기본 항목'은 확실히 건져야 하므로, 인정 안 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.)

• 태업은 하되, 읍소도 하고 능글거리며 둘러대기도 해서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.

• 그러나 천천히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. '요청 자료 찾고 있고, 정리하고 있다.'

• 감정 상하면 얼마든지 열의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.

• 그들도 사람이다.

▋ 3)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면 안 된다.

① 행정 소송의 특성

▋ 4) 패턴을 인정하면 안 된다.(사실 확인서 포함)

무혐의로 처리됨

• 가장 중요한 내용임

• 행정 소송 시 부당 청구의 입증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 • 원칙적으로 복지부에서는 부당 청구자 명단 전체에 대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(복지부 사무관 혼자서 감당

• 조사가 끝나면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정리해서 사전 처분 -> 이의 신청 -> 본 처분 -> 행정소송으로 진행됨

- 못함) • 만일 병원 측에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한 청구였음을 입증한다면 일부만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
- 잘못된 패턴을 인정하고 사실확인서를 쓰면 그 자체가 입증 자료가 되므로 상황이 종결되어 버림 ② 대처법
- 둘러댄다.(일단은 넘어가고 관계 자료를 검토 후 답변을 찾는다.)

• 평소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진료를 루틴으로 하면 안 된다.

- 무작위로 30명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사실과 다르더라. 1000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라' -> '그 30명에게

• 조사자가 곤란한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해버리지 말고, 일단 내용 확인 후 답변 하겠다고

• 문제 case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패턴은 인정하지 않는다. '이런 처방이 나간 환자가 1000명이 있는데 그 중

- 왜 그런 잘못된 처방이 나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나는 항상 제대로 했고, 그 30명에게만 잘못된 처방이 나간 것 같다
- ▋ 5) 실사가 나온 순간 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.
 -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일단 잘못 진행된 부분은 돌이킬 수 없다.

• 실사가 나온 순간 바로 '산의회 법제 이사팀'에게 연락해서 실시간으로 조언을 받도록 한다.